

대구지방법원 2023. 7. 14 선고 2023가단1035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경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6. 23.

판 결 선 고 2023. 7. 14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. 9. 2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주 장

가. 원고의 주장

1)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

원고는 2020년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에 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“C은 원고에게 10,109,864원과 위 금원 중 720,000원에 대하여 2023. 12. 23.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1.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6,889,195원에 대하여 2020. 12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지급명령(위 법원 2020차전 1741 양수금 사건)을 받았다.

2) 피고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

D의 아버지인 E가 2022. 9. 2. 사망하자, D와 피고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의 상속과 관련하여 2022. 9. 22.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,

2022. 9. 27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2. 9. 2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C의 무자력과 사해행위
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당시 C은 무자력이었고,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(7분의 2)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,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4)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C은 E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E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다.

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.

2. 판 단

갑제1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C에게 양수금 채권을 가진 사실을 알 수 있고, F기관과 대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무자력인 사실,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7분의 2 상속지분을 가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의 사해의사나 사해의 인식에 관한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피고는 C이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종화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경상북도 칠곡군 아파트 동[도로명 주소] 경상북도 칠곡군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

1층 1126.78㎡, 2층 내지 10층 각 1116.66㎡, 11층 내지 12층 각 1076.71㎡, 13

층 1011.78㎡, 14층 내지 15층 각 722.70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경상북도 칠곡군 대 13171.3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 철근콘크리트조 59.93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13171.3분의 31.4901 ㎡

